

회원간 서비스 계약서

CONTRACT NO: SA-2020-0130

계 약 명	개발중인 App에 안전거래 기능 추가 개발		
계 약 금 액	5,000,000원		
계 약 기 간	본 계약 서명날인 및 대금 입금 시점으로부터 36일간		
개 발 기 간	본 계약 서명날인 및 대금 입금 시점으로부터 33일간		
검 수 기 간	프로젝트 과업 완료 시점으로부터 03일간		
클라이언트	모토라이드 주식회사		
파트너	김세현		
중개사	주식회사 프리모아(FREEMOA)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회원간 서비스계약과 중개사의 서비스약관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클라이언트","파트너","중개사"는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붙임: 1. 계약 일반조건 1부 2. 프리모아 서비스약관 1부 3. 프로젝트과업범위 1부

2020년 01월 30일

'클라이언트'	'파트너'	'중개사'	
모토라이드 주식회사	김세현	주식회사 프리모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26	대구광역시 북구 대천로17길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98 대륭포스트타워6차 911호	
대표이사 국 한 진 (인)	kingskylon	대표이사 한 경 원 (인)	

SA-2020-0130 페이지 1 / 19



프리모아 회원간 서비스계약

본 계약은 모토라이드 주식회사 (이하 "클라이언트"라 한다) 와 김세현(이하 "파트너"라 한다)가 『 개발중인 App에 안전거래 기능 추가 개발 』(이하 "프로젝트"라 한다) 에 관한 용역 계약 이행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 1 조 (목적) :::

본 계약은 상기 계약 당사자간에 용역 서비스를 거래함에 있어 상호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고 프로젝트 과업 수행을 위한 각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기본원칙) :::

- ①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상호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 합니다
- ②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법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합니 다
- ③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본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3 조 (용역 수행 범위) :::

- ① 클라이언트가 파트너에게 요청한 프로젝트 과업요청사항에 따라 파트너는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여 프로젝트의 아래의 과업범위를 기준으로 용역을 시행하여 제5조의 과업의 결과물을 클라이언트에게 공급 제공합니다.
 - 가. 클라이언트가 작성하여 파트너의 확인을 득한 요구사항 정의서 또는 과업지시서 또는 상 세한 기획문서
 - 나. 본 계약에 따라 파트너가 기획단계의 용역 결과물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여 클라이언 트의 확인 후 서면상의 승인을 득한 디자인 및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기획문서

제 4 조 (프로젝트 과업수행) :::

클라이언트가 의뢰한 프로젝트 과업수행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합니다.

① 자료의 제공 및 프로젝트 착수

가. 클라이언트는 프로젝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파트너에게 제공하고, 파트너는 자료 검

SA-2020-0130 페이지 2 / 19



토 후 결정된 요구사항정의서 또는 과업지시서, 상세 기획문서에 의해 과업을 착수합니다.

- 나. 과업의 착수 시점은 합의된 프로젝트 선 대금 또는 전체 대금이 프리모아 예치계좌로 입금 확인이 된 상태로 파트너가 자료를 제공받고 검토 및 승인한 날로부터 합니다.
- ② 과업의 범위
 - 가. 본 계약서에 과업범위를 정의한 기획서 또는 과업지시서를 붙임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3조 1항의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의 승인을 득한 문서를 기준으로 파트 너는 과업을 이행합니다
 - 나. 프로젝트 과업의 변경은 본 계약서 제 11조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해 서면 처리 합니다.
- ③ 인도 및 검수
 - 가. 파트너는 완료된 프로젝트 결과물을 단계별로 지정된 서버에 업로드 및 클라이언트에게 통보하고, 클라이언트는 완료된 프로젝트 결과물을 인수 일로부터 03일 이내에 검수하여 그결과를 파트너에게 서면상 통보 하도록 합니다.
 - 나. 검수 방법은 다음 제 6조에 의거 시행합니다.
- ④ 과업수행 완료 확인
 - 가. 파트너가 인도한 프로젝트 결과물에 클라이언트가 검수 후 이상 없음을 서면으로 파트너사에 통보 하였을 때 프로젝트의 과업 수행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5 조 (과업의 결과물) :::

파트너는 다음의 과업수행 결과물을 클라이언트에게 최종 설계본(파일,문서)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개발 결과물	제출 시점	
완료 산출물 (원소스 포함)	개발완료시점	

제 6 조 (검수 방법 및 하자 보수) :::

- ① 파트너가 프로젝트의 과업 수행 완료 후 이를 클라이언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프로젝트 과업수행에 의한 완료된 결과물의 최초 1차적인 기능단위별 검수는 파트너사에서 수행 후 클라이언트에 통보하며 클라이언트는 전체 통합 검수 및 테스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는 프로젝트의 통합 검수/테스트 결과를 파트너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하자는 파트너가 적극적으로 보수하여야 합니다.
- ③ 파트너는 양방의 통합검수 완료 후 프로젝트 결과물이 클라이언트에게 최종 설계본 형태로 납품이 된 시점 이후 60일까지 계약서에 명기된 과업범위 내 하자/보수는 파트너가 보수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하자보수

SA-2020-0130 페이지 3 / 19



보증기간 동안 효력이 발생하며 파트너는 무상으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종료 이후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의 협의과정 없이 클라이언트가 개발 원본 코드의 변경이나 기능, 설계상의 코드를 수정으로 추가적인 하자가 발생 한 경우는 하자범위에 포함 하지 않습니다.

- 가. 과업 결과물이 오탈자, 오작동, 미작동 하는 경우
- 나. 과업 결과물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경우
- 다. 본 계약서의 합의된 과업범위와 결과물의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라.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 ④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2개월 이상 또는 본 계약서에 명기된 하자보수일이 2개월 이상일 경우 파트너는 클라이언트에게 SGI 이행하자보증보험을 발행 하여야 합니다. 제 17조 3항에 의거 이행하자증보험 발급 비용은 프리모아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이행하자보증보험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 가.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가 개인일 경우
 - 나. 파트너의 이행하자보증한도를 초과하여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 한 경우
 - 다.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의 일방의 사유로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라. 클라이언트가 해외 거점을 두고 있는 업체일 경우(한국에 사업자가 없는 경우)
- ⑤서비스 유지보수(기능 및 디자인 변경,추가,삭제)는 본 계약서의 과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운영단 유지보수 계약은 단위별 프로젝트 추가계약 혹은 클라이언트와 파트너 간의 합의 후 별도로 진행합니다.

제 7 조 (지체보상금) :::

- ① 파트너가 과업범위 상의 과업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정상작동이 불가능하거나 반복적인 이상이 발생하하는 경우로, 지체되는 시간에 대해 계약상의 과업 완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대금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지체보상금을 제하고 지급받게 되며 해당지체보상금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됩니다. 지체보상금은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파트너에 부과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어 과업수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는 제1항의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가. 불가항력에 의하여 과업수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나. 클라이언트의 책임으로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 다. 파트너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SA-2020-0130 페이지 4 / 19



제 8 조 (재 하도급) :::

- ① 파트너의 과업의 일부를 제3자(이하" 파트너 수급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시점에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클라이언트에 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때 파트너와 파트너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합니다
 - 가. 공정위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 나. 파트너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가 지급방법
- ② 클라이언트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트너 수급사업자가 과업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파트너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프리모아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 가. 파트너가 지급정지 및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트너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요청을 받을 경우
 - 나. 클라이언트와 파트너간의 협의를 통해 파트너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한 경우
 - 다. 파트너가 파트너재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프로젝트 수행 일정에 영향이 있을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파트너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직접 지급 액에 해당하는 파트너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지급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보며, 파트너 수급사업 자에 대한 파트너의 지급채무 또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④ 클라이언트가 파트너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파트너에게 기지급한 대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⑤ 제 2항에도 불구하고 파트너가 파트너수급사업자의 과업대가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클라이언트 및 프리모아는 해당 사유를 파악하여 파트너의 직접 중지요청 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파트너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대금 지급) :::

대금지급에 있어서 프리모아의 에스크로 지급시스템에 따라 <u>클라이언트의 선금 보호와 파트너의</u> 잔금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파트너에게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계약금액을 지급 및 프로젝트 대금을 프리모아 에스크로 예치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SA-2020-0130 페이지 5 / 19



대금 입금(클라이언트)

항 목		지그 이지 ㄸㄴ 시저	TI크은	그애
내 용	지급방식	지급 일자 또는 시점	지급율	금액
에스크로	현금	프로젝트 킥오프 이전 시점	100%	5,000,000원
총계 5,000,000원				

대금 지급(파트너)

항 목		지급 일자 또는 시점	지급율	금액
내 용	지급방식	시합 철자 또는 시험	시답팔	百年
에스크로	현금	클라이언트 컨펌 및 프로젝트 종료	100%	4,500,000원
총계 4,500,000원				

- ① 계약 체결 후 프리모아(사업자등록번호: 113-86-89926, 신한은행: 한경원(프리모아) 110-413-349571)에 프로젝트 선 금액 입금하여 예치하도록 하며, 프리모아는 대금입금이 되었음을 확인 후 예치 내역을 클라이언트 및 파트너에게 서면 전달 후 모든 계약사항이 이행되도록 합니다.
- ② 클라이언트는 파트너가 제공한 작업일정표에 의한 작업량 체크가 가능하여야 하며, 현 작업상황 보고(작업 문서)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6조, 2항(인도 및 검수절차) 및 제 9조 대금지급(파트너)에 따라 프리모아는 클라이언트의 대금지급 승인을 득한 후에 프리모아 지급절차에 의거 24시간 내에 예치금 일부 혹은 전액을 파트너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 ④ 분쟁,취소,환불 절차 진행 시 프리모아의 붙임(서비스이용약관)에 의거 대금을 처리토록 합니다.

제 10 조 (계약해지) :::

- ① 파트너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클라이언트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가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나.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가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포함),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
 - 라. 클라이언트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파트너에게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 기타의 협조요 청에 파트너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SA-2020-0130 페이지 6 / 19



- ②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 클라이언트 또한 파트너가 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나. 클라이언트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파트 너사의 작업에 상당기간 동안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또는 파트너가 특별한 사유없이 과업 수행을 거부/불응한경우
 - 다. 클라이언트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트너에게 과업 수행에 대한 대금을 프리모아로 예치하지 않는 경우
- ③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는 제 1항 및 제 2항 각호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 합니다.
- ④ 제 1항에 의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상대방이 해제(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 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없이 변제 합니다.
- ⑤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⑥ 클라이언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경우, 파트너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 시까지의 개발비 집행정산서 및 개발 진행보고서를 클라이언트에 게 제출하고,클라이언트는 기성부분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승인 합니다.

제 11 조 (계약내용의 변경) :::

- ① 파트너와 클라이언트의 양 당사자 동의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 할 수 없으며 과업범위,사양,과 업기간의 계약서 내용 변경이 수반 될 경우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상호 서면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클라이언트 와 파트너가 양 당사자의 합의 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상의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 ② 본 계약보다 상세한 내용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체결 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어 부당조항/특약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무효합니다.
- ③ 계약 변경은 서면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일방은 상대방에게 변경된 계약내용의 이행책임 및 계약 내용의 이행 책임 및 계약 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③ 제 1항의 계약서 이외 특약 사항은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에게 통지하고,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다만, 클

SA-2020-0130 페이지 7 / 19



라이언트 또는 파트너가 수락거부의사가 있을 때에는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의 통지를 접수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④클라이언트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 통보 및 일정기한을 정하고 파트너가 동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동의 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상호합의에 의한 계약 변경 절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클라이언트가 서면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하고 동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파트너가 계약변경에 상호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⑤클라이언트는 서면 합의된 과업범위 이외 추가적인 과업요청에 의한 전체 작업량에 영향이 있을 경우, 과업기간을 서면합의 과정을 통해 조정 할 수 있으며, 파트너의 요청 및 상호협의에 따라 본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파트너는 클라이언트에게 청구/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지식재산권) :::

① 지식 재산권 보호

- 가. 파트너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클라이언트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을 본 계약에 의한 과업수행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클라이언트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 나. 파트너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와 제 3 자간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클라이언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 중 책임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다. 프리모아는 도용이나 침해가 의심되는 저작물에 대해 조사하지 않습니다

② 지식재산권 양도

- 가. 파트너는 클라이언트가 과업의 완료를 승인하는 순간 당사자 간의 지식재산권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나. 전체 또는 부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클라이언트에게 요청한 상태에서 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이 파트너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게재 할 권리의 보호

SA-2020-0130 페이지 8 / 19



- 가. 클라이언트는 완료된 업무 결과물에 대해서 프리모아 또는 파트너가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업무의 결과를 별도의 로열티 없이 자유롭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나. 클라이언트가 업무의 목적 상 게재를 허용치 않는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의사를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이 통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프리모아와 파트너는 게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제 13 조 (비밀유지) :::

- ①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본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 ② 클라이언트는 파트너의 기술자료,경영정보 등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 ③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본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 1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혀 입증이 되는 경우 이를 배상한다.

제 14 조 (면책사항) :::

- ① 파트너는 증명이나 증빙이 가능한 전산상의 장애, 클라이언트의 부주의에 의한 데이터 손실, 또는 전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업무 처리의 지연 및 불능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 ② 서비스 유지관리를 위해 합의된 관리비 및 기타 비용 등이 클라이언트의 요금납부 지연으로 서비스가 중단되어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파트너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제 15 조 (계약의 효력발생) :::

- ① 본 계약과 서비스약관은 양방이 서명날인 및 프로젝트 선대금이 프리모아로 입금이 확인이 된 날로부터 유효합니다.
- ② 계약 기간은 프리모아 에스크로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대금 입금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해당 과 업범위에 대한 업무가 종료되어 전체 프로젝트 대금이 파트너에게 전달되는 시점까지 입니다.
- ③ 본 계약의 간인은 생략하며 대체방법으로 제3자 프리모아가 쌍방 날인된 계약서를 http://m.freemoa.net/doc/new/31013/31013.pdf 웹서버에 사본을 보관토록 합니다, 이는 본 계약서의 접근매체(QR코드) 링크를 통한 원본확인이 가능함을 뜻하며 유효합니다.

SA-2020-0130 페이지 9 / 19



제 16 조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 합의) :::

- ① 클라이언트와 파트너, 프리모아는 계약내용과 서비스약관을 숙독(熟讀) 이해하였으며, 약관의 전(全) 조항에 동의합니다.
- ② 본 계약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프리모아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일반 상 관례에 준합니다.
- ③ 프리모아의 분쟁,취소,환불,절차에 의한 합의에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국제 민상사 분쟁 해결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의 신속절차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합니다.

제 17 조 (프리모아 중재 및 이행하자보증서 지원) :::

- ① 분쟁의 최종 단계인 대한상사 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 취소, 환불,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프리모아는 계약금 100,000,000원(1억 원, 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의 규모의 중재 본 신청한 건에 대해서 프리모아는 중재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 ②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에 한해 1/3은 클라이언트, 1/3은 파트너가 지불하며 나머지 1/3에 대해서 프리모아가 지원하게 됩니다.
- ③ 파트너가 클라이언트에 발급하는 SGI 이행하자보증보험(하자보수보증금율:10%)건 대해서 계약 금 5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규모일 경우 프리모아는 발급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SA-2020-0130 페이지 10 / 19



프리모아 서비스이용약관

제 18 조 (프리모아 에스크로) :::

본 약관은 프리모아가 제공하는 에스크로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프리모아와 회원, 또는 회원과 회원 사이의 금융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위해 모든 거래에 대해 그 대가(이하 "결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 받아회원의 거래의 결과에 대한 상호 확인 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거래에 대한 신뢰도의 향상과 대금 문제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①. 접근 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가. 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 회원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다.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라. 회원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오류의 정정

- 가. 회원은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프리모아에 그 오류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나. 프리모아는 상기 항에 규정에 따라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는 경우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전달합니다.

③ 대금의 상태 공개

- 가. 회원간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계약된 회원들은 이해당사자간의 에스크로를 통해 대금의 결제, 예치, 지급 등의 상태를 프리모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 대금의 상태가 변하는 경우 최대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상태를 적용해야 합니다.

④ 결제서비스

가. 회원이 결제대금을 프리모아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계좌이체와 직접 금융기관에 등록한 회원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프리모아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 결제내용의 확인

가. 프리모아는 회원과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SA-2020-0130 페이지 11 / 19



나. 회원이 상기 항에서 정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 <u>contract@freemoa.net</u>

전화 : 02-6380-7521

⑥ 예치계좌

가. 프리모아는 결제된 대금을 프리모아의 국민은행을 통해 개설한 지정 계좌에 입금하고 유지합니다.

- 나. 회원은 프리모아 에스크로를 이용함에 있어 예치된 대금에 대해 이자 또는 별도의 수입을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 프리모아는 예치된 대금에 대한 이자 또는 별도의 수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① 프리모아는 에스크로를 통한 예치 계좌의 입출금에 대해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해외 송금, 환전 등)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⑧ 지급조건

- 가. 프리모아는 예치된 대금에 대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간의 서비스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정된 회원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 회원이 상대방의 지급 요청에 대해 프리모아 서비스를 통해 승인한 경우』
 - 『 회원이 상대방의 환불 요청에 대해 프리모아 서비스를 통해 승인한 경우』
 - 『 회원간의 서비스 계약에 따른 지급 시점으로부터 별도의 분쟁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계약에 명시된 기한이 지나도 별도의 응답이 없는 경우』
 - 『 별도의 분쟁 조정 과정을 거친 후 환불, 취소,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르는 경우』
 - 『 별도의 분쟁 조정 과정을 거친 후 환불, 취소, 분쟁 해결 절차에 의해 프리모아에서 안 내하는 내용에 대해 해당 절차에 명시된 기한이 지나도 별도의 응답이 없는 경우』

⑨ 관리책임의 의무 및 면책

- 가. 프리모아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약관 위반에 해당하거나 법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주의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나. 프리모아는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다. 프리모아는 회원으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에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 서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

SA-2020-0130 페이지 12 / 19



제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⑩ 분쟁조정의 의무

가. 회원은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 <u>contract@freemoa.net</u> 전화번호 : 02-6380-7521

- 나. 회원이 프리모아에 분쟁 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하며 자세한 사항은 이용 약관 내의 환불, 취소, 분쟁 해결절차를 따릅니다.
- 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있어 프리모아가 제안하는 환불, 취소, 분쟁 해결 절차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라. 프리모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19 조 (회원간의 계약에 따른 의무) :::

① 원활한 소통

- 가.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성공적인 업무의 진행을 위해 최대한 원활하게 소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나.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상대방의 요청에 대해 최대 7일 이내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 파트너의 업무 완료 보고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대답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 후 7일이 지나 면 업무에 대한 검수가 완료되어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업무진행과 수행

- 가. 클라이언트는 업무 진행에 있어 관리와 점검, 요청에 대한 동의와 적절한 지불의 책임이 있으며, 파트너에게 업무 수행에 있어 보유 장비, 도구, 자료들을 포함한 적절한 대금의 청구, 우수한 성과와 요청에 대한 동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나.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각각 업무를 진행함과 수행함에 있어 선의로 이행하며 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SA-2020-0130 페이지 13 / 19



③ 양도 및 위임

가.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본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서에 명시된 직무의 수행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취소 및 환불) :::

본 환불, 취소, 분쟁 해결 절차 약관은 업무의 진행을 의뢰한 클라이언트(이하 "클라이언트")와 업무를 수행하는 파트너(이하 "파트너")간 체결하게 되는 계약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갖습니다. 이는 클라이언트와 파트너가 회원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각각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라 프리모아의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있습니다.

프리모아의 취소, 환불, 분쟁 해결 절차에 의해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업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프리모아의 취소, 환불,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업무를 취소하고 대금을 전액 환불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합니다.

① 확인기간

- 가.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다양한 요청 등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하여 **최대 7일 이내에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나. 7 일 이내 의사를 표시 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모든 사항(환불, 취소,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취소

- 가. 계약은 상호 확인을 통해 성립하게 되므로 계약간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는 계약에 대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나. 계약 도중의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의 취소 요청에 확인 기간 동안 응답이 없을 경우 상대방의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다. 계약의 취소에 대해 상호 확인한 경우 회원간 서비스 계약과 프리모아 에스크로에 따라 대금을 처리하게 됩니다.
- 라. 클라이언트는 계약 성립 후 파트너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 또는 반품할 수 없습니다.

③ 환불

- 가.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 『 프리모아 에스크로에 따라 파트너에게 대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 클라이언트는 파트너에게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의 환불 요청에 대해 파트너가 확인 기간 내에 응답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A-2020-0130 페이지 14 / 19



- 『 환불 요청에 대해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최우선적으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의무가 있으며,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환불 요청이 처리됩니다.』
- 『 클라이언트는 파트너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 또는 반품할 수 없습니다.』
- 나. 검수 후 승인에 따라 대금이 지급이 된 경우
 - 『 대급이 지급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대금에 대한 지급 승인을 프리모아에게 전달 한 경우 입니다.』
 - 『 클라이언트의 환불 요청에 파트너가 확인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환불 요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 『 파트너의 단계별 과업에 대한 예치금이 프리모아 에스크로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경우에도 프리모아는 파트너에게 환불에 대한 대금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제 21 조 (분쟁 해결 절차) :::

회원간 서비스 계약에 따라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자체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모아를 통해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일부의 과정은 별도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부적절하게 프리모아의 분쟁 해결 절차를 악용하거나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사이트 이용 관련 정책에 따라 프리모아는 회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간 협의

- 가.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업무 진행 도중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상대방의 정당한 사유에 따른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확인 기간 내에 응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나. 회원은 이와 같은 이의 제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화하여 기록 및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다. 자체 협의를 통해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 프리모아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② 프리모아 지원

- 가. 회원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는 프리모아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나. 프리모아는 업무 내용, 진행 내역, 메세지 등의 기록된 내용에 대해 담당 지원 인력을 배정하여 클라이언트와 파트너간 분쟁 요소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다. 프리모아는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에게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에 대해 회원은 확인 기간 내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SA-2020-0130 페이지 15 / 19



- 라. 프리모아는 지원간 업무 진행 내역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획득하게 되며 획득하는 내용에 대해 외부로 발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 마. 프리모아는 클라이언트와 파트너가 모두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가 프리모아의 분쟁 해결 절차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프리모아 역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프리모아와의 분쟁을 국내 및 국제 민상사 분쟁 해결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 22 조 (이용요금) :::

① 대금 전달(상호 승인 시)

- 가.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업무 완료 후 상호 확인에 따라 프리모아 에스크로에 의해 보호 중인 대금의 처리에 동의하게 됩니다.
- 나. 클라이언트의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10%를 차감한 후 파트너에게 전달됩니다.
- 다. 파트너가 기업 회원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차감 된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라. 파트너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 회원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차감 된 대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3.3%를 추가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마. 파트너는 프리모아의 대금을 지급 받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② 대금 전달(프로젝트 취소 시)

- 가. 프리모아 에스크로에 따라 기본적으로 파트너의 귀책에 따라 업무가 취소될 경우 대금 지급 자체가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대금 전액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됩니다.
- 나. 클라이언트의 귀책에 따라 업무가 취소되거나 환불, 취소,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대금의 일부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대금 전달 : 상호 완료 시의 정책에 따라 수수료를 차감한 후 파트너에게 지급하며, 잔액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됩니다.

SA-2020-0130 페이지 16 / 19



과업범위 규정

- 양측 협의 하에 작성되는 개발/추가/수정 문서 등의 내용들은 모두 문서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작업 범위>

- + 과업 분류
 - 서버 일부 개발
 - 클라이언트 (Android, IOS)
- + 개발 내용

PG API 연동

카카오페이 API 연동

서버 작업(앱 - 서버 통신, 데이터 베이스 작업)

실시간 시스템(채팅)

GPS 연동

SA-2020-0130 페이지 17 / 19





사 업 자 등 록 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335-87-01416

법인명(단체명) : 모토라이드 주식회사

대 표 자 : 국한진

개 업 연 월 일 : 2019 년 02 월 08 일 법인등록번호 : 110111-7007605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26(미아동)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26(미아동)

사 업 의 종 류 : 업태 서비스

도소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종목 오토바이 리스, 렌트

오토바이, 오토바이 부속품

오토바이 수리

배달대행 프로그램 제작, 유지, 보수,

배달대행 퀵서비스

발 급 사 유 : 신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부(\lor)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2019 년 02 월 14 일

도 봉 세 무 서 장







SA-2020-0130 페이지 18 / 19

FREEMOA



SA-2020-0130 페이지 19 / 19